



등록번호 : 20130100371

최초등록일 : 2013.05.16

최종수정일 : 2024.04.30

www.namno.co.kr

namno1922@hanmail.net

남 노 갈 비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조이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조이에프앤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4길 43번지(중화산동2가 732-2)

대표전화 : 063)224-2171

대표팩스 : 063)224-2173

담당부서 및 전화 : 영업관리팀 063.224.217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조이 에프앤비	남노갈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32-2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 10. 05	2011. 10. 05	조철재	063-224-2171	063-224-2173
	법인등록번호	210111-0079246	사업자등록번호	402-81-9331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조철재	남노갈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32-2		
	(주)조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에프앤비		조철재	063-224-2171	063-224-217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심미영	남노갈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32-2		
	(주)조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에프앤비		조철재	063-224-2171	063-224-217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남노갈비]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남노갈비	맛과 멋의 고장 전주 남노송동에서 시작된 갈비전골전문 식당
상 호	남노갈비_____점	
상표(서비스표)	남노갈비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62,712	997,463	165,248	1,056,166	-12,215	-886,763
2022년	1,254,471	967,472	286,999	1,362,416	94,317	121,750
2023년	1,438,767	964,942	473,825	1,207,362	179,415	178,876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조철재	대표이사	1997.03~2002.12	(주)CJ제일제당 해외사업부	홍콩 주재원
			2003.01~2010.10	(주)CJ제일제당 해외사업부	중국 주재원
			2011.10.05~현재	(주)조이에프앤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심미영	감 사	2011.10.05~현재	(주)조이에프앤비 감사	회사 감사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남노갈비 (상표권)	영업상 사용	2008.05.29 출원 2009.04.14 등록	출원제2008-0014489호 등록 제41-0183821호	조철재	2029.4.14
	영업상 사용	2008.05.29 출원 2009.04.14 등록	출원제2008-0014488호 등록 제41-0183820호	조철재	2029.4.14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Ⅱ. 가맹본부의 [남노갈비] 가맹사업 현황

1. [남노갈비] 를 시작한 날: 2004년 10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72년 10월 10일) - 추정

2. [남노갈비]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남노갈비	남노갈비	신정환	2004.10~2007.10.22.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732-2
(유)남노 프랜차이즈	남노갈비	원정화	2007.10.23~2008.3.1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732-2
(유)남노 프랜차이즈	남노갈비	이길규	2008.3.15.~2011.3.3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732-2
녹원	남노갈비	이대규	2011.4.5~2011.10.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732-2
(주)조이 에프앤비	남노갈비	조철재	2011.10.5~현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732-2

3. 남노갈비] 업종

영업표지	업종	
남노갈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물갈비전골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남노갈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2	11	1	13	12	1	14	13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1	1	-	1	1	-	1	1	-
대전	-	-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1	1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10	10	-	9	9	-	10	10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남노갈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3	2	0	4	1	11
2022	11	2	0	1	0	12
2023	12	1	0	0	0	13

[남노갈비]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남노갈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남노갈비]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남노갈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말 가맹점수	전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6개월미만 영업제외
전체	13	220,236	3,463	875,492	23,039	26,920	235	※1곳제외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1	해당없음						5곳미만
대전	1	해당없음						5곳미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10	273,127	5,164	875,492	23,039	71,181	1,423	※1곳제외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매출가의 2.5배를 곱하면 가맹점의 매출가가 산정이 됩니다.]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총 13곳 중 12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3	2,374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남노갈비]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35]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100			
광고			3,100			
관측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동전주우체국 영업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4(인후동2가 1534)	063-240-391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조이에프앤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남노갈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4,200]				
가입비	16,5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2,2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3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소모품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개점시작 1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인쇄물, 견습재료 등 소요되는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현금)보증금	5,000	개점시작 10일 이전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 및 손해배상액을 공제 후 반환 됨. 단, 상호, 서비스표 등 당사와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합계	29,200(일부 부가세 포함)
가입비	16,500(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부가세 포함)
개점소모품비	5,500(부가세 포함)
(현금)보증금	5,000(부가세 미포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6,000~ 99,000	약 2,365~ 2,723	[120]㎡ 기준		
필수설비(정착물)	(협력업체)	25,000~ 30,000	약 687~ 825	설치 2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유동성이 있음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	55,000~ 60,000	약 1,512~ 1,65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120㎡ 기준 3.3㎡ 증가 시 1,650천원

				잔금: 점포개설 전 3일		추가부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협력업체)	2,000~3,000		물품 공급 2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간판	(협력업체)	2,000~3,000		점포개설 전 5일	개점 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협력업체)	2,000~3,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 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소모품, 구인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상기의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철거공사, 전기승압장치, 냉난방기기, 가스공사, 샷시공사, 외부환풍, 입상공사>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내용 중 인테리어 공사에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지도/감독의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3.3㎡ 당 165천원(부가세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점포선정의 문의처 : 당사의 점포개발팀, 표지에 표기된 전화번호 참조]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의 개업교육이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남노갈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로열티	(협력업체)	년 660	년초 납입	반환되지 않음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금 (전국광고)	(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광고 분담금 (지역광고)	(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협력업체)	연간 1,200~2,400	교육 실시 3 일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협력업체)	당사의	당사의			VII.1. 점포환경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기준에 따라 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협력업체)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사용료	(협력업체)	50~100	약정 지급	후불로 반환없음		※포스 사용갯수에 따라 사용금액 변동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063-224-2171)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관리팀 (063-224-2171)
영업관리	가맹점의 영업관리	월 2회 이상	문의: 관리팀 (063-224-217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남노갈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받는 양수인이 당사에 양도 가맹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만원**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상기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수취여부

※ 해당없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물갈비전골	강제 (아래와 같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계약해지	1회 위반시 서 면으로 시정요 구와 동시에 상품 공급 중단 이 될 수 있습 니다.
남노정식			
양념갈비			
남노불고기			
떡갈비			
갈비탕			
육개장			

설렁탕			
-----	--	--	--

[취급상품 제한내용 및 조건]

취급상품 제한/위반시 책임
<가맹계약서> 제 21 조 [경영지침 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①,② 제 21 조 [경영지침 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① 乙은 식품의 조리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등에 대하여 『남노갈비』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甲의 매뉴얼이나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乙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 『남노갈비』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메뉴 이외의 상품이나 메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乙이 甲이 정한 메뉴나 조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甲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소비자 이외의 다른 가맹점사 업자나 제3자에 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물갈비전골 남노정식 양념갈비 떡갈비	<가맹계약서>제 20 조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 ④ 가맹점사업자는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필수품목 중 일부를 첨가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조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다른 가맹점이나 소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계약해지	1회 위반시 서면으로 시정요구와 동시에 상품공급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전북권	그 외 타시도		
물갈비전골	15,000	16,000	사전 통지 (변경시 시행 2주전 통지)	2024. 1. 1 기준
남노정식	10,000	10,000		
양념갈비	15,000	15,000		
남노불고기	10,000	10,000		
떡갈비	10,000	10,000		
갈비탕	15,000	15,000		
육개장	10,000	10,000		
설렁탕	11,000	11,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격통보방법 및 제한]

가격 제한
<가맹계약서> 제 21 조 [경영지침 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③ 乙은 甲이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소비자 가격에 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甲이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상품별 또는 용역별 소비자 권장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甲이 제시하는 소비자 권장가격이 물가 변동 또는 甲 또는 乙의 영업 정책 등으로 인하여 변동할 경우, 甲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하고 시행 2주 전에 이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乙이 제3항의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2주 전에 서면에 의하여 변경 의사를 甲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 乙은 甲이 제시하는 소비자 권장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甲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그릇에 끓이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남노갈비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600M를 영업지역함(단, 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할인점, 역사(기차, 지하철) 등 대규모 유통집객 시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한올	www.namno.co.kr 등	물갈비	완제품판매 ※유통업체에서 각 온라인몰에 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4.4%	12.3%	0.0%	3.3%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89%	11%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남노갈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
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5조 2항-3가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3나
○ [남노갈비]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3다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조 2항-3라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제8조[가맹비 및 로열티]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2. 乙이 제1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乙이 제12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 · 시정요구권] 각 항에 의거한 甲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4. 乙이 제17조[乙의 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5. 乙이 제20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 乙이 제21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7. 乙에게 제23조[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8. 乙이 제28조[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9.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0.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아래 참조> ▷금전지급의무 내용 제 8 조 [가맹비, 로열티 등] ① 乙은 본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u>가맹비</u> 일금이천구십만원정(W20,900,000)(부가세 포함)을 甲이 지정하거나 정보공개서 상에 지정된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상기의 가맹비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2개월 이전에 점포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개설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기관에 예치되어야 한다. 다만 甲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乙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의 가맹비를 甲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甲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제도에 관련된 증서를 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乙은 계약기간 중 매월 말일까지(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일금 일십만원(W100,000)부가세별도)을 <u>로열티</u>로써 甲에게 지급한다.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④ 甲은 운영교육 및 특별교육이 실시되는 시간 및 장소, 내용, 乙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 및 산

출근거 등을 정하여 운영교육일 경우 교육실시 1개월전에 , 특별교육일 경우 교육실시 7일전에 乙에게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광고 및 판매촉진 등]

③ 전국규모의 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의 경우,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당사가 50%, 가맹점사업자측이 50%을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측의 각 가맹점사업자간의 비용부담은 당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부담한다. 지역단위의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가맹점사업자측이 50%을 부담한다.

제 20 조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

⑧ 乙은 상품의 인수와 동시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① 甲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자는 乙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③ 乙이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甲은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할 수 있다.

⑤ 乙은 전항의 경우, 운영교육 및 특별교육의 통지를 받고, 교육시작일 3일전까지 통지된 금액을 甲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⑥ 甲은 乙이나 乙의 직원에 대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추가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시정요구권]

① 乙은 『남노갈비』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이 유지되도록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이 작성하여 乙에게 배포한 운영매뉴얼이 甲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乙은 점포에 항상 매뉴얼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매뉴얼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이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 원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甲은 『남노갈비』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의 유지, 소비자 보호, 乙의 점포 경영활성화 및 경영지도 등을 위하여 甲의 직원(슈퍼바이저)을 파견하여 乙의 점포경영 및 운영상태 전반에 대해 영업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때 乙은 甲의 직원(슈퍼바이저)이 자유로이 점포에 출입하고 영업상태를 원활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甲은 乙의 가맹점에 대한 운영점검 결과를 乙에게 통보하고, 乙은 지적된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甲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甲은 乙 점포의 운영을 점검하기 이전에 미리 관리기준을 정하여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甲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⑦ 甲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후화된 실내장식, 비품, 기계류, 시설물 등(이하 설비 일체라고 한다)의 교체와 보수를 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乙이 부담하며,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직접 교체 및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교체 및 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7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양도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

제 20 조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

① 乙은 『남노갈비』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

적인 ‘필수품목’은 甲 또는 甲이 공식 지정하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여야 한다.

기타 ‘부수품목’은 甲이 정한 품질기준이나 지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甲은 전항의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을 시장상황에 부응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乙은 이러한 甲의 가격 조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이 제1항에 의하여 상품의 조달을 하지 못할 경우, 『남노갈비』의 브랜드 이미지, 맛의 통일성에 적합한 품질, 규격 등을 구비한 대체 품목을 제3자로부터 직구매할 수 있다. 다만, 그 적정성에 관하여 甲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甲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승인을 유보할 수 없다.

④ 乙은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필수품목 중 일부를 첨가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조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다른 가맹점이나 소비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 甲의 Brand 및 Logo가 새겨진 상품이나 공산품, 소비재와 甲의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물이나 판촉물은 甲이 직접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乙은 甲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을 하여야 한다.

⑦ 乙은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적합한 방법으로 상품을 운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⑧ 乙은 상품의 인수와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경영지침 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① 乙은 식품의 조리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등에 대하여 『남노갈비』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甲의 매뉴얼이나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乙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 『남노갈비』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메뉴 이외의 상품이나 메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乙이 甲이 정한 메뉴나 조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甲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乙은 甲이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소비자 가격에 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甲이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상품별 또는 용역별 소비자 권장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甲이 제시하는 소비자 권장가격이 물가 변동 또는 甲 또는 乙의 영업 정책 등으로 인하여 변동할 경우, 甲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하고 시행 2주 전에 이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乙이 제3항의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2주 전에 서면에 의하여 변경의사를 甲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 乙은 甲이 제시하는 소비자 권장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甲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상품공급의 중단]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乙에 대한 상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 조건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乙이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상품·자재 등의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2. 乙이 甲의 경영지도나 지침을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乙의 채무액이 甲이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4. 乙이 甲과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5. 乙이 본 계약에 의해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대금지급을 요청받고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6. 乙이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7. 乙이 조리미숙이나 고객서비스 불량으로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甲에게로 년 3회 이상 항의가 있는 경우 8.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9. 乙이 ‘필수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수품목’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乙이 식품의 조리방법, 판매상품의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 28 조 [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① 乙은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甲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乙은 항상 매뉴얼 및 점포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甲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매뉴얼이나 기타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乙은 이 계약기간 중에 甲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甲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종업체에 근무하지 못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乙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乙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乙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乙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甲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乙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6조 2항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乙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甲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甲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乙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乙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계약서 제 33 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은 당사, 가맹점사업자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쌍방의 서면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

<가맹계약서>

제 17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양도 등]

- 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또는 영업을 처분하거나 전항의 양도, 전대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2개월전에 당사에게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당사가 위 1개월 이내에 응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처분하거나 전항의 양도, 전대 행위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적법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전차한 제3자(이하 '영업양수인'이라 한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당사에 대한 모든 영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④ 영업양수인은 당사와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할 수도 있으며, 승계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일금 오백만원(W 5,000,000)을 입금하거나 보증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영업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 ⑤ 양도에 대한 승인 : 당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경우, 양도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
 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당사 및 당사의 공식지정업체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2.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양도일 전에 영업양수인 또는 매장의 관리자가 점포개시 전에 수료해야하는 교육을 완료한 경우
 4. 영업양수인이 양도일 현재 당사의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조건, 인성, 사업경험, 재정능력이 부합한 경우
 5. 당사가 양도할 시점에 변경된 조건이 있어 신규 가맹계약 및 부수계약을 요구할 경우 이를 영업양수인이 동의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양수인이 당사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변경된 디자인이나 영업표지, 인테리어가 있을 경우, 변경된 디자인이나 영업표지, 인테리어로 교체 또는 수리한 경우
 7. 양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에 준하여 제28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규정을 지켰다고 서명하는 경우
 8. 영업양수인이 제4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 ⑧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본조와 관련하여 입증서류(요구일 현재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

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본사와 협의 후 결정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 행사	본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본사와 협의 후 결정	본사와 협의 후 결정
업무위탁	본사 승인시 가능	본사와 협의	본사와 협의 후 결정	본사와 협의 후 결정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 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남노갈비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후 2년간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그릇에 끓이는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063-224-217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남노갈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3:00 (권장시간)	1월당 26일 이상 점포 운영	문의: 관리팀 (063-224-217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불특정 소수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1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이상/월	관리팀	
서비스(10항목)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2회이상/월	관리팀	
청결(2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이상/월	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관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비고
품질(quality)	
1 원재료의 선입, 선출을 위해 입고일자가 기입되어 있다. 2 원재료의 보관은 매뉴얼대로 시행되고 있다. 3 원재료의 구입은 운영기준대로 시행되고 있다. 4 권장가격은 제대로 고시되고 있다. 5 냉동, 냉장고의 온도는 기준대로 되어있다. 6 각 기기의 설정온도는 기준대로 되어있다 7 부메뉴의 가지수는 기준대로 시행되고 있다. 8 주메뉴()의 셋팅모양은 매뉴얼대로 시행되고 있다. 9 주메뉴()의 셋팅모양은 매뉴얼대로 시행되고 있다. 10 주메뉴()의 셋팅모양은 매뉴얼대로 시행되고 있다. 11 상품의 정량과 온도는 기준대로 지켜지고 있다. 12 주문 상품의 모양은 찌그러짐이 없고 제대로 나오고 있다. 13 주문 후 상품은 제시간에 나오고 있다. 14 기기류는 정량 및 제품온도는 기준대로 지켜지고 있다. 15 돈이나 신체에 접촉한 손으로 쿠키나 래핑은 하지 않는다.	
서비스(service)	
1 근무중인 MATE 전원의 복장은 기준대로 지켜지고 있다. 2 내점하는 고객에게 전원이 타이밍 좋고, 활기차게 인사를 하고 있다. 3 스마일과 눈인사의 타이밍도 좋다. 4 제품의 서빙은 스피드감이 있게 행해지고 있다. 5 거스름돈은 양손으로 고객의 손바닥에 확실히 건네주고 있다. 6 제품을 건네기 전에 반드시 최종 체크를 하고 있다.(수량, 품목, 포재의 오염, 영수증) 7 기다리게 하는 경우 웨이팅 룰을 지키고 있다. 8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메뉴의 소개를 바르게 행해 원활히 대처하고 있다. 9 플로어라운드의 로테이션은 바르게 실시되고 있다. 10 고객에게 실례의 행동은 없다(말씨, 무례, 말대꾸, 기기나 신발을 끄는 잡음)	
청결(clean)	
1 점포주변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다 2 간판 및 POP는 전구의 끊어짐이나 파손, 더러움이 없다. 3 출입구 매트 깨끗이 청소되어 먼지나 오염이 없다. 4 점포 유리 및 커튼류는 더러움이나 파손이 없다. 5 문턱 위는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져 있지 않고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있다. 6 POS POP는 더러움, 색바램, 구겨짐이 없이 바르게 부착되어 있다.	

7	의탁자는 파손이나 오염 없이 깨끗하다.	
8	플로어 바닥은 오염이 없고 쓰레기가 떨어지면 즉시 청소되고 있다.	
9	트레쉬박스는 부착물 등이 제대로 투착되어 있고 페인트의 벗겨짐이나 내. 외부가 깨끗하다.	
10	벽에 걸린 그림액자, 판넬 등은 더러움이 없이 바르게 걸려 있다.	
11	식목, 조화 등은 더러움이나 파손이 없다.	
12	조명류는 끊어짐이나 파손 오염이 없다.	
13	천정이나 공조기는 파손이나 얼룩이 없어 깨끗하다.	
14	세면대 거울은 물기가 떨어져 있지 않고 깨끗이 닦여져 있다.	
15	화장실청소는 플로어라운드와 병행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체크표에 기입하고 있다.	
16	화장실 변기, 바닥, 환기통, 조명류는 파손이나 오염이 없다.	
17	주방 세면대는 깨끗하고 손톱 브러시, 세제의 설정이 되어있어 손 살균을 철저히 하고 있다.	
18	주방기기, 후드스텐드, 닥트는 오염이나 기름때가 묻어있지 않다.	
19	주방바닥은 건조 유지가 철저히 되어있고, 싱크대 주변은 정리정돈 되어있다.	
20	창고, 탈의실, 휴게실, 책상주변은 정리정돈 되어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분담액 명세서 통지 → 가맹점 광고 불참 시 사유를 당사에 서면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함 → 통지 후 7일까지 가맹점분담액 입금 → 광고 시작 → 가맹점사업자가 사용내역 요청 시 당사는 근거자료(내역서,명세서 등)제시함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이벤트 상황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 관리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
④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甲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④ 乙은 이 계약종료 후 2년간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甲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乙은 甲에게 위약벌로 일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8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대략 45일]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u>9~15쪽 참조</u>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
가맹금 예치	-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가맹금/보증금)	D-27(1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실시/주방설비 포함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1(7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포의 상황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정이나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기간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

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 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 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 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운영 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1개월 전에 <u>교육시간</u>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제품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u>교육시간</u>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업 교육	6일	4,400	최초 계약시 이수 (최초의 가맹비에 포함)
운영 교육	2일	1,100	수시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2일	1,100	수시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가맹계약서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 ① 甲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자는 乙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 ② 甲은 교육 및 훈련과정을 개업교육, 운영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乙이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甲은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 5 조 [계약기간]> 갱신거절 사유

②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해지]> 계약해지 사유

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위반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乙이 제1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남노명가 삼성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23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년 11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86,983천원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매장 POS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63-224-217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namno.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가맹점현황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직영점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021, 2022, 2023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